

【별지】

국민연금공단 공무직(시설직)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직(시설직)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공무직(시설직)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수행업무

구분1	구분2	수행업무
시설직	소장(마)	• 사옥시설물의 유지보수 종합계획, 점검 및 보수의 현장감독 및 결과보고, 사옥의 필요에 맞는 안전관리자 관련업무, 기타 사옥담당자의 업무전달 및 사옥관리 관련 업무분장으로 부여받은 업무 수행 등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근무지	인원	임용 예정일
시설직 소장(마)	전주완주지사	1	2024. 3. 4.(월)

지원자격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시설직 정년 : 만 60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참고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시설직 소장(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물(사옥)관리 총괄책임(소장) 3년 이상 또는 아파트 관리 총괄책임(소장) 3년 이상인 사람 * 세부기준 ‘별첨1’ 참조

※ (경력산정)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인정되는 자격증 〉

분야	자격증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안전기술사
에너지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14.)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근무장소: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시설직 소장(마)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원칙으로하며, 일 8시간 범위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정년: 시설직 만60세

보수월액(중식비 및 명절휴가비 포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별도)

구분	시설직 소장(마)
연봉월액	3,229천원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2.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4.2.7.(수) ~ 2.14.(수) 18:00까지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일> `24.2.19.(월) ※ 개별안내
인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참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자료로 활용 	`24.2.19.(월) ~ 2.21.(수) ※ 개별안내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방법: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30분 내외) 실시 	`24.2.23.(금) ※ 개별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의 예비합격자 선발 	`24.2.29.(목) ※ 개별안내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보기간(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무기계약직) 정규임용 	`24.3.4.(월) 예정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역 (※ 면접전형 시 제출)
공무직 (시설직)	<p>1. (경력사항 관련) - 경력사항 기재자 아래 사항 필수 제출(1-1, 1-2 모두 제출)</p> <p>1-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p> <p>1-2)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종(예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p> <p>※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분야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p> <p>2. (우대사항 관련) - 해당자에 한함</p> <p>2-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포함), 한부모 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p> <p>2-2)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p> <p>※ 2-1)~2-2)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4.2.14.)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p> <p>3. (자격사항 관련)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각 분야 자격증 사본</p>

4.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대상자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면접전형	10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서류전형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서류전형	5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하며,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기간이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대한민족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5.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접수처: nps02411@nps.or.kr
-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24.2.29. ~ 3.15.)
- 세부방법: 지원자의 메일문의에 답변
- 예외사항: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응시자, 전형위원 등의 개인정보 및 타 법령에 접촉되는 사항',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채용을 위배하는 사항' 등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2024. 2. 14.)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광주지역본부(062-958-200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7.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밖의 발전소 공통)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전주완주지사의 경우 1,500kw 미만으로,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